

의성군의회 공고 제2021-26호

「의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」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의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1년 12월 7일

의성군의회 의장



의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,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.
- 의성군의회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,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(안 제2조)
- 모범공무원 포상 절차(안 제3조)
- 모범공무원 선발(안 제4조)
- 모범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(안 제5조)

○ 모범공무원 상여금 지급 중지(안 제6조)

○ [별지 서식] 상여금증서 신설

3. 의견 제출

○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13일까지 의성군의회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의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※ 의견제출 및 문의처 : 의성군 의성읍 후죽5길 24 【우편번호 : 37337】

의회사무과 (☎ 054-830-6391)

의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의성군 포상 조례」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대상) 모범공무원포상(이하 “모범공무원”이라 한다)은 의성군의회 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1.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
2.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
3.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
4.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자

제3조(포상절차) 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「의성군의회 포상 규정」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.

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,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.

③ 「의성군의회 포상 규정」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. 다만, 「모범공무원 규정」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.

제4조(선발) 모범공무원은 의성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그

선발인원은 매년 1명으로 한다.

제5조(상여금 지급)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「모범공무원규정」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며,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.

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.

③ 모범공무원 표창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함께 교부한다.

제6조(상여금 지급의 중지)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. 다만,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.

1. 퇴직 또는 면직된 때
2. 징계처분을 받은 때
3.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
4. 의회 외의 기관으로 진출된 때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제 호

상 여 금 증 서

소 속 :

직성명 :

위 사람은 20 년도 모범공무원으로 「의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
규칙」에 따라 이 증서를 수여함.

지 급 액 : 금 원

20 년 월 일부터
지급기간

20 년 월 일까지

20 년 월 일

의 성 군 의 회 의 장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□ 모범공무원규정

제2조(선발대상) ① 제1조에 따른 공무원(이하 “모범공무원”이라 한다)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.

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.

제8조의2(모범공무원 수당)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,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
2.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
3.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

② 휴직한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.

가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1항제1호

나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1항제1호

다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4조제1항제1호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,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.

가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

나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

다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, 제7호의2,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·제3항